

## 『2026년도 전북형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지원사업(고도화)』 지원대상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전북형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지원사업(고도화)을 지원합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09일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### 1

### 모집개요

#### 사업목적

- (고도화형) 신청 시점 기준 사회적경제 진입 완료된 기업으로, 기업의 상품 개선(디자인·포장) 및 전문업체를 통해 B2C/B2B 판로 입점으로 실질적인 판로 연계지원

####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'26. 12월

#### 지원대상 : 사회적경제기업 기업 6개사

#### 지원내용

구분	지원대상	모집규모	지원내용
고도화형	사회적 경제기업	6개사	• (판로지원) 기업의 상품 및 판로 현황진단 후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상품 개선 및 판로 연계

## 2

## 신청기간 및 방법

- 공고기간 : '26. 2. 9.(월) ~ 2. 25.(수), 17:00
- 신청기간 : '26. 2. 9(월) ~ 2. 25.(수), 17:00 (기한 엄수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신청
  -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

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(<https://jbok.kr/>) 접속 → 로그인(회원가입 필수) → 기업지원사업 → 분야별 지원사업 → [전북형 사회적경제 스케일업(고도화)지원사업] → 신청하기

\* 제출 후 접수 확인을 위해 063-711-2132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.

- 신청자격 :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기업

구분	지원대상	
사회적경제 고도화형	사회적경제 진입완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공고일 기준 인증·지정·인가 받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-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소셜벤처기업 <b>*개인사업자는 신청불가</b></li><li>• 상품개선 및 유통판매에 필요한 제품 보유 기업</li></ul>

\*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기업(제조업의 경우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해야함)으로 지원기간 동안 자격유지 필수

\*\*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,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

\*\*\* 사회적경제기업의 조건: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.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해당되지 않음

## 참여 제한대상

1.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중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
2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
3.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
4.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
5. 사회적경제관련 지원 사업 중 자금지원 받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
6. 국가사업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7. 부도·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운영 및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
8. 신청한 사업화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받은 경우
9.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(7~8p 참고)

### 3

## 제출서류

### < 공통 제출서류 >

제출서류	제출요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서식1&gt;사업신청서</li> <li>▪ &lt;서식2&gt;사업계획서</li> <li>▪ &lt;서식3&gt;개인정보 동의서</li> </ul>	<p>서식 다운로드(jbba.kr 및 jbok.kr) → 신청서·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→ 온라인 제출(jbok.kr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1&gt;사업자등록증명</li> </ul>	<p>① 온라인 : 홈택스, 정부24 ② 오프라인 : 관할세무서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2&gt;취득 인증 및 특허</li> </ul>	<p>인증, 특허증 등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3&gt;기업 지정서</li> </ul>	<p>중증장애인기업(생산품)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녹색제품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4&gt;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</li> </ul>	<p>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5&gt;사회공헌활동 증빙서류</li> </ul>	<p>봉사활동(1365), 기부금 영수증, 정기기부증명원 등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6&gt;SVI 가치 측정보고서(※ 해당사)</li> </ul>	<p>SVI 가치 측정보고서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7&gt;사실증명(총사업자 등록내역)</li> </ul>	<p>① 온라인 : 홈택스 ② 오프라인 : 관할세무서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8&gt;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원</li> </ul>	<p>① 온라인 발급 (국 세) 국세청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지방세) 정부24 (www.gov.kr) 위택스 (www.wetax.go.kr)</p>
	<p>② 오프라인 발급 (국 세) 세무서 방문 후 발급 (지방세) 구청(행정복지센터) 방문 후 발급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9&gt;매출실적확인 서류 (표준재무제표, 과세표준증명원 등)</li> </ul>	<p>'24년도, '25년도 매출실적확인 표준재무제표,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서류</p>

### <사회적경제 진입 기업 제출서류>

제출서류	제출요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&lt;첨부10&gt;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</li> </ul>	<p>인증서 사본 (예비)사회적경제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)</p>

## 4

## 지원 내용

### 1 사회적경제 고도화형

□ 지원내용 : 상품 경쟁력 강화 + 전문 유통판로 연계



- (기업진단) 기업별 서면 인터뷰 진행 후 인터뷰 자료기반 기업/상품/판로의 현황파악
- (상품개선) 외부디자인(최신 트렌드, 상품 포장디자인 개선), 포장 재질 개선, 홍보 콘텐츠 제작, 상품 외부표시(법) 위반사항 점검 및 개선
- (판로연계) 상품/채널 특성에 맞춰 개선된 상품 기반 B2C/B2B판로에 입점하고 프로모션/기획전을 진행하여 최대 성과 창출

## 5

## 선정 평가

### □ 평가절차 및 일정(안)

-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

신청·모집	선정평가		이의제기	최종선정 및 협약	프로그램 운영
	1차	2차			
신청서류 접수	서류평가	발표평가	이의제기 신청	선정안내 및 협약체결	전문업체 유통·판로 운영
우리원 홈페이지	우리원		우리원	우리원 ↔ 선정업체	우리원 → 선정업체
'26. 2월	'26. 3월 중		평가결과 발표 후 7일간	'26. 3월 중	'26. 4월~11월

\*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방법

- (서류평가) 심사위원회(5인 내외)를 구성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후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
- (발표평가) 심사위원회(5인 내외)를 구성하여 과제의 적정성 및 필요성, 사업화 계획에 관해서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
- (예비합격자)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%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

### □ 이의제기

- 공고문 내 이의제기 양식을 활용하여 기한 내 제출[첨부11]

□ 서류평가

평가항목		제출서류	비고
일반사항 (20)	기업업력(10)	사업자등록증	
	근로자수(10)	(‘26년도) 4대보험 확인서	
기업경쟁력 (40)	신규인력고용(10)	(‘25년도) 4대보험 확인서	
	매출상승률(15)	‘24년도와 ‘25년도 표준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확인 가능 서류	‘26년도 신생기업 평균점(9)
	기술혁신(10)	각종 인증 및 자격 (특허, 면허 등) 인증 및 지정서	
	기업 경쟁력 확보(5)	(중증장애인기업(생산품)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녹색제품)	
사회적책임 (20)	취약계층고용(10)	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	‘25년
	사회공헌활동(10)	증빙서류 (활동증명 1365) (기부금 영수증 건별) *정기 기부는 연간 1회로 산정	‘25년
가치평가 (20)	사회적가치(10) 경제적가치(10)	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-

□ 발표평가
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
사업 필요성(20)	-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-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
사업계획 현실성 및 성장가능성(40)	- 사업계획의 현실성 -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-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및 독창성 -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
판로개척 및 판매계획(10)	- 판로개척의 적절성 - 제품 판로계획에 대한
기대효과(30)	- 사업 참여를 통한 제품화 및 판로개척 효과 - 사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기여 및 확대 가능성

## 참고(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형주점업
56212	무도유형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'20.12.~'21.12.) (3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</b> 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

표준산업분류	업종
	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\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## 6

## 유의사항

-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제출 인정 시간은 온라인 사업신청 지정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(미첨부시 신청 불가),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-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대상 미확인(연락불능, 미숙지 등)으로 인한 불이익(미선정, 선정취소 등)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,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통보 후, 제출요청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,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.

### □ 문의처

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동체정책팀 김지도 선임담당관  
- 내선번호: 063-711-2132, 이메일 : eden@jbba.kr
  - \* 상담가능 시간 : 평일 09:00~18:00(12~13시 점심시간 제외)
  - \*\*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